

#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안내문

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 간 “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”을 체결하여 공급되며, **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**입니다.

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하며, **‘민간임대주택’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되는 주택**입니다.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, **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차인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**

## ●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**확인 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</b>          | [관련 법령, 협약 내용] <b>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</b> 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<b>사용검사, 임시사용승인</b> 또는 건축법에 따른 <b>사용승인,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(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)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</b>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</b>            | <b>대항력(점유, 전입신고)과 우선변제권(확정일자)</b> 를 갖춰야, <b>임차인 보호(선순위자)</b> 가 될 수 있습니다.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</b>              | [관련 법령] 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8조”에 따라 <b>소액임차인(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)은 최우선변제권(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)을 가진</b><br>※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(*서울시): 1억6,500만원 이하(*23.02.21~), 1억5,000만원 이하(*21.05.11.~23.02.21.)<br>최우선변제 금액(*서울시): 5,500만원 이하(*25년 기준). 따라서 5,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<br>※ 대항력 요건 : 전입신고(*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) |
| <b>권리관계 등 상황</b><br>(*계약일, 잔금일)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<b>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하며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</b><br>※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원상복구 계약 전</b>                |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<b>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●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임차인 입주 중 **확인 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임대차계약 진행 시 누락사항 유무 확인</b> | 거주 중이더라도 위 ‘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’ <b>재점검 해보기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★보증보험 미갱신 확인★</b>         | 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,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)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(SGI) 임차인이 즉시 가입 |

※ **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**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, 계약(갱신),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**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**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 
(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: 02-763-0765~0768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: 02-2133-1200)

#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청년안심주택 166타워 입주 예비자 추가 모집공고

(서울시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외 7필지)

공공지원 민간임대

2025. 11. 06.

태성청년주택

## [주택개요]

- 주택위치 : 서울시 중구 광희동1가 166외 7필지 (2,4,5 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)
- 공급호수 : 총 84세대 중 2025년 10월 추가모집 공공지원민간임대 4세대  
(특별공급 1세대, 일반공급 3세대)
- 단 지 명 : 166타워
- 시 행 사 (임대사업자) : 태성청년주택
- 시 공 사 : 에코21 (주)

※ 기존 계약자분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11.06.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■ 당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.

■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며,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 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 (근저당 설정 등 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입주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(100만 원)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.)

※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, **입주예정께서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 (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 체결 전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입주 예정자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**

\*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 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

■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**계약 체결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(개인사유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)

■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: 각 세대별 계약기간 2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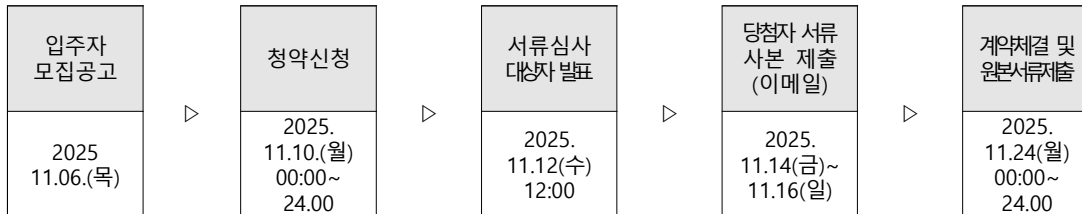
| 공급호수  | 임대차기간                  | 보증보험 가입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007호 | 2023.11.17.~2025.11.16 | 가입      |
| 1201호 | 2023.11.11.~2025.11.10 | 가입      |
| 1904호 | 2023.11.08.~2025.11.07 | 가입      |
| 2007호 | 2023.11.20.~2025.11.19 | 가입      |

(신규계약자는 해지 후 재가입 됩니다.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, 보증보험 미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.

-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-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(2023.08.28.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.
-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청년안심주택 단지명 입주지원센터(070-7609-0177)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## [공급일정 및 청약]



- 입주지정기간 : 기존 계약자 전입 시~
- 청약 문의
  - 대표번호 : 070-7609-0177, 월요일~금요일 09:00~16:00 (점심시간: 11:30~12:30)
  - 홈페이지 : (<https://166tower.modoo.link>)
  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 (070-7609-0177)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청약과 관련한 우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신청 : 166타워 홈페이지 게시판 ( <https://naver.me/5cqQTrou> )
  -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이메일(스캔본)로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-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2,000%(20배수)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,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 ※ 예비자 소진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. 해당의 경우에도 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되며,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
-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- 입주자 사전점검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.
- 유의사항 (그 외 유의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)

## [공급현황]

특별공급 (단위 : 천원)

| 공급<br>유형 | 주거<br>전용<br>(타입)    | 공급<br>호수 | 보증금 35% |      | 보증금 50% |      | 보증금 60% |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임대보증금   | 월임대료 | 임대보증금   | 월임대료 | 임대보증금   | 월임대료 |
| 청년       | 14.17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4.72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4.13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8.41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8.48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5.51m <sup>2</sup> | 1        | 48,400  | 451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합 계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,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※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

일반공급 (단위 : 천원)

| 공급<br>유형 | 주거<br>전용<br>(타입)    | 공급<br>호수 | 보증금 40%             |      | 보증금 50% |      | 보증금 60% |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| 월임대료 | 임대보증금   | 월임대료 | 임대보증금   | 월임대료 |
| 청년       | 14.17m <sup>2</sup> | 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94,500  | 325  |
|          | 14.72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4.13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8.41m <sup>2</sup> | 1        | 65,500              | 609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8.48m <sup>2</sup> | 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| 15.51m <sup>2</sup> | 1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85,100  | 430  |
| 합 계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|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79.76%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,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※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

## [신청자격 및 제출서류]

■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10.29. 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, 제출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

※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■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■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및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\*신혼부부 및 쉼어형의 경우,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 계약 불가)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)

- 자동차가액 기준 : "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" 준용

■ 그 외 신청자격 : 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름. 단,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

• 2025년 소득기준 – 청약 시 아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순위 선택 필요

(청약 시 선택한 소득 수준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)

-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('25.02.27)

[단위 : 원]

| 순 위 |   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 | 5인 가구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순위 | 100% | 3,598,164 | 5,477,003 | 7,626,973 | 8,578,088  | 9,031,048  |
| 2순위 | 110% | 3,957,980 | 6,024,703 | 8,389,670 | 9,435,897  | 9,934,153  |
| 3순위 | 120% | 4,317,797 | 6,572,404 | 9,152,368 | 10,293,706 | 10,837,258 |

• 지역기준 – 동일 소득일 경우 지역 순위 적용

| 순 위 | 지 역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순위 | 서울특별시 중구 | 거주자 : 주민등록상 주소지<br>대 학 : 소재지 내 대학의 재적증명서<br>직 장 : 소재지 내 직장의 재직증명서 |
| 2순위 | 서울특별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순위 | 그 외 지역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• 2025년 자동차 가액기준 –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,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

| 자동차가액   |
|---------|
| 4,563만원 |

• 2025년 자산기준

| 청 년<br>30~39세 가구 기준 적용 | (예비)신혼부부<br>소득 3분위 기준 적용 | 비 고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254                    | 337                      | 단위 : 백만원 |

※ 청년안심주택 청년(본인) 자산 기준은 30~39세 가구 금액을 따름

※ 청년안심주택 (예비)신혼부부 (구성될)세대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금액을 따름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: 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르되, 최신(2025년) 기준에 따름

※ "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"과 "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"의 차이

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
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## [당첨자발표]

※ 기존 계약자로 선정되었던 분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
■ 166타워 홈페이지 게시판 (<https://166tower.modoo.link>)

- 예비자 공실 발생 시 순차 개별 연락

- 당첨자 :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·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.

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,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
## [별첨]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(최신(25년))

- 특별공급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 |     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주민등록초본 (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<br>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월평균 소득(해당 세대원(인원) 전체)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공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및 자산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“과세내역 없음” 인 경우도 발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<br>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<br>준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.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소득자    |       | 사실증명<br>(신고사실없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득여부 확인 후<br>해당 항목 택1<br><br>- 모집공고일 이후<br>세대가 변동된<br>경우 모집공고일<br>기준 세대구성원의<br>월평균 소득현황<br>제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<br>자 | 일반근로자 |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br>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직장, 세무서,<br>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신규취업자 |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<br>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개인사업자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신규사업자 |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,<br>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| 국민연금관리공단,<br>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법인사업자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.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<br>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<br>본인명의(금융, 주식, 보험 등 전체) 발급 후 작성<br>- 주거예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<br>본인명의(대출 전체) 발급 후 작성<br>※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<br>※ 신용정보조회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|         |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<br><br>금융결제원(인터넷)<br><br>주거래 은행 | 부동산 및<br>자동차등의 자산<br>자료는 제출하신<br>지방세세목별과세<br>증명서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(사본, 해당자만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현재 거주하고 있는<br>주택이 전·월세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. [자동차 소유자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<br>또는 복지로 포털,<br>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.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<br>- 대학 : 재직증명서<br>- 직장 :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재직증명서 : 대학<br>재직증명서 : 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입주 당일 전입<br>신고를 한 후<br>(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일반공급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<br>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<br>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4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 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<br>5. 공급신청서<br>6. 서약서<br>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,<br>정부24(인터넷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“과세내역 없음” 인 경우도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      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<br>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<br>준용 |
| 10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<br>또는 복지로 포털,<br>정부24(인터넷) |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입주 당일 전입<br>신고를 한 후<br>(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